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2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허용(조은희의원안)	3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7.
- (3) 회 부 일 : 2024.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을 신

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허용(조은희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비밀유지(제81조의13) ○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제1항) - 대상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예외: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u><신 설></u>	☐ 비밀유지 ○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u>

* 조은희의원안 2024. 11. 27. 발의(의안번호 5927)

☐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9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1996년에 신설¹⁾됨.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예외 규정(제81조의13제1항 각 호)]

호	과세정보의 요구 주체	과세정보의 제공 주체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1	국가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등	세무공무원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2	국가기관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3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4	세무공무원 간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
5	통계청장		국가통계작성
6	사회보험운영기관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
7	국가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심사(당사자 동의를 전제)
8	국정조사위원회		국정조사 목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제공
9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목적

□ 개정안은 이러한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 사유로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²⁾ 신청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개별법상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국가기관 등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적극적인 대응

1) 1995년,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BASF, HOECHST 등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가 국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OECD 가입 심사과정에서 독일, 영국 등의 회원국이 우리 정부의 납세자 비밀보호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2) 몰수추징명령은 범죄로 취득한 특정 재산에 대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명령이고, 보전추징명령은 범죄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히 피의자의 일반 재산을 동결하여 추후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임.

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총 797건의 몰수·추정보전³⁾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410억 원 상당⁴⁾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발표하였음.

경찰의 몰수·추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6% 증가한 수치에 해당함.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성과]

(2023.7. 기준)

구분	보전 건수	보전된 재산 가액
2019년	96건	702억원
2020년	234건	813억원
2021년	858건	8,351억원
2022년	1,204건	4,389억원
2022년 1.~6.	452건	1,316억원
2023년 1.~6.	797건	1,410억원

자료: 경찰청(경찰청은 2023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성과를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성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음)

□ 직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 개설과 특정사기범죄⁵⁾가 비슷한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특정사기범죄가 570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함.

3) 몰수·추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함.

4) 법원의 몰수·추정보전 결정일 기준,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시가

5)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투자사기, 불법다단계사기, 범죄단체조직사기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므로 유사수신투자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보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직종별 범죄수익 보전성과]

(2023.7. 기준)

구분	합계	특정사기	도박장소 개설	성매매알선	황령·배임	기타
건수	797건	187건	227건	129건	13건	241건
	(100%)	(23%)	(28%)	(16%)	(2%)	(30%)
보전된 재산가액	1,410억	570억원	361억원	175억원	119억원	185억원
	(100%)	(40%)	(26%)	(12%)	(8%)	(13%)

자료: 경찰청

-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첫째, 사기 범죄 및 재산 범죄에서 과세정보 활용의 어려운 측면을 해결할 수 있음.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소유한 재산을 명백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나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차명재산에 대한 추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현행 과세정보의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과세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명채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추적하고 몰수·보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범죄 수익의 추적과 몰수·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세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 수익을 명확히 추적하고 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촉진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둘째, 과세정보가 제공되는 예외 사유는 점점 더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조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의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 2019년에 개정⁶⁾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과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형벌” 적용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국세기본법(2019.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16841호)

첫째, 수사기관⁷⁾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⁸⁾를 통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법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3호⁹⁾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측면이 있음.

오히려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별 과세정보를 광범위하게 열람하게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과세정보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비밀유지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에 따라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조세저항 등 원활한 국세행정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둘째,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해당 “국가기관”이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직접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내부 검토와 책임 절차를 거치지만, 개정안과 같이 사법경찰

7) 수사기관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가 있음.

8)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3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 개인 단위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통제가 어려워져 남용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특히 수사권 남용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납세자의 정보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 제공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 수사관의 재량에 맡길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 개인에게 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책임성과 통제력을 훼손하게 되므로, 과세정보의 요구 주체는 기관 단위로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셋째, 과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면 「국세기본법」 체계상 해당 소관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과세정보 활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¹⁰⁾에 따라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개별 법률을 개정한 후 필요한 과세자료를 요구하면 국세청은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¹¹⁾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또한, 과세정보의 활용은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¹²⁾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임.¹³⁾

□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기소 전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수사와 달리 몰수·추정보전명령 목적에 한하여 영장 없이도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 3683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2)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13) 「법제처 유권해석」 안전번호 18-0783(법제처 회신일자 2019-03-27)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